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보

http://www.seo.incheon.kr/

선	기관의장
람	

제1272호 2017. 6. 14(수)

차 례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---------- 1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**편집 : 홍보미디어과 [032-560-4146]**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- 821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,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. 06. 14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입법취지

○ 상위법(민법) 개정으로 인한 법령부적합 관련 조례 정비

- 법무부는 2011.3.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
- 개정민법이 2013.7.1.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, 한정성년후견 선고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·금치산선고의 효력은 18.6.30.까지 존속
- 용어를 개정했음에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 (2013.7.1.)금치산·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
- 이를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공백 발생 방지

○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○ 부칙에 ‘제2조(금치산자에 관한 경과 조치)’ 규정 마련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하여 ‘제3조제1항’ 중 ‘성별을 고려하여’라는 문구 추가

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 홍보미디어과, 전화 560-4142, 팩스 560-270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○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○ 법무부는 2011.3.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

○ 개정민법이 2013.7.1.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, 한정성년후견 선고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·금치산선고의 효력은 18.6.30.까지 존속

○ 용어를 개정했음에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 (2013.7.1.)금치산·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

○ 이를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공백 발생 방지

2. 주요내용

○ 부칙에 ‘제2조(금치산자에 관한 경과 조치)’ 규정 마련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 사전검토 의견 반영하여 ‘제3조제1항’ 중 ‘성별을 고려하여’라는 문구 추가

○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
나. 신・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
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
라. 관계 법령 발췌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홍보대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구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”를 “홍보대사”로, “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”를 “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제통보”를 “해제 통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촉등”을 “위촉 등”으로, “담당부서의”를 “담당 부서의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금고이상”을 “금고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해촉)”을 “(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) 제5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임무)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임무)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촉) ① 서구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・규칙심의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.	제3조(위촉) ① 홍보대사----------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별도의 위촉 해제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.	② ---------- 해제 통보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홍보대사의 위촉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,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.	④ -------- 위촉 등---------- 담당 부서의 ---------- 담당 부서의 ----------.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5조(결격사유) ----------

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.	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	2. 금고 이상----------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제6조(해촉)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	제6조(위촉 해제) ---------- 위촉 해제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수당 등)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제7조(수당 등) ---------- 「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---------.

관계법령 발췌

□ 민법

부 칙 <법률 제10429호, 2011.3.7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, 한정후견,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"금치산" 또는 "한정치산"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"성년후견" 또는 "한정후견"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실·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
실 · 과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 · 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17. 6. 14 ~7. 4 ○ 내 용 - 의견수렴	-	-	-

입 법 예 고			
협의개요	제 출 자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17. 6. 14 ~7. 4 ○ 내 용 - 구보게재 - 인터넷	-	-	-